

<제4강>

한글 맞춤법

(문교부 고시 제 88-1호:1988.1)

제 1 장 총 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해 설>

<제1항>

1.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함은 음소주의적 표기법을 이른다. 국어는 표음문자이고 음소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語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을 말하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풀이된다.
 - 1) '바치(밭이) 반만(밭만) 받파(밭과)'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저하된다.
 - 2) 맞춤법은 문자언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음성언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음성언어의 경우는 일회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발화 실수가 있더라도 의미를 파악하고,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 별 영향이 없다. 그러나 문자언어의 경우는 다르다. 그것은 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되어야만 의미 파악이 이뤄진다. 따라서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3. 한글 맞춤법의 원리 : 맞춤법은 우리말의 표준어를 적는 규정이다. 맞춤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데에 근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필자와 독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1) 맞춤법의 두 원리(음소적 표기법 : 형태음소적 표기법)

(1) 음소적 표기법(표음적 표기법) : 들리는 대로 적는 방법으로,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바뀌면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는 표기법이다. 들리는 대로 적기 때문에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자인 세종대왕이 관여한 문헌은 형태음소적 표기이었으나 나머지 문헌은 음소적 표기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가 “어린 百姓”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의 “八終聲可足用”규정에 따른 표기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곳(←곳), 받(←받)

(2) 형태음소적 표기법(표의적 표기법) :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방법으로,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적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방법이다. 받이(→[바치]), 받만(→[반만])

4.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 조항은 세 개의 항목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 첫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표기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소리대로 적는다(음소적 표기법)’를 원칙으로 한다.
- 셋째, 그러나 소리대로 적는 것이 ‘어법에 맞아야 한다(형태음소적 표기법)’

2) “소리대로”의 원칙은 ‘어법에 맞도록’이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란 구절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첫째 어느 쪽으로 적는 것이 어법에 맞는지 살펴 그에 따라 적고, 둘째 어느 쪽으로 적든지 어법에 맞는 정도에 별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3)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적는 것’

-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다는 것이다. 즉, 어법에 맞게 적는 방식은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사(實辭)의 표기를 고정시키고 그 뒤에 조사나 어미가 붙는 형식으로 적는 것이다.
- 예) ‘받-이[바치], 받-을[바틀], 받-만[반만], 받-도[받또]’; 흘-어[흐터], 흘-는[흔는], 흘-고[흔꼬].

4) 종합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의 올바른 해석.

- 첫째,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다. 체언과 용언 어간은 대표적인 실사이기 때문이다.
- 둘째, 그 밖의 경우는 어느 쪽으로 적는 것이 뜻을 파악하기 쉬운지 살펴 뜻을 파악

하기 쉬운 쪽으로 적는다.

- 셋째, 어느 쪽으로 적든지 뜻을 파악하는 데에 별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 넷째, 규칙적인 현상은 어법에 맞도록 적고, 불규칙한 현상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예컨대, '부치다(힘이 ~)'와 '붙이다(우표를 ~)'는 '부치-' '붙이-'부분이 모두 어간이어서 첫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후자는 전자에 비해 동사 어간 '붙-'과 의미상의 연관성이 뚜렷하여 '붙이-'처럼 적어 줄 때 그 뜻을 파악하기 쉬운 데 반해 전자는 그러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둘째, 셋째 원리에 따라 '부치다'와 '붙이다'로 구별하여 적는 것이다.
 - ★ 부치다 : 힘이 ~. 편지를 ~. 논밭을 ~. 안건을 회의에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 붙이다 : 우표를 ~. 흥정을 ~. 불을 ~. 취미를 ~, 조건을 ~, 별명을 ~.
 - ★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형식형태소이며 의존형태소이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제2항>

띄어쓰기 규정은 <제7강> 참조.

<제3항>

외래어 표기법은 발표

제 2 장 자 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을)
ㅍ(피읍)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ㅊ(쌍기역) ㅌㅊ(쌍디귤) ㅃㅃ(쌍비읍) ㅃㅅ(쌍시옷)
ㅃㅈ(쌍지읒) ㅑㅑ(애) ㅑㅑ(애) ㅑㅑ(애)
ㅑㅑ(예) ㅑㅑ(와) ㅑㅑ(왜) ㅑㅑ(외)
ㅑㅑ(워) ㅑㅑ(웨) ㅑㅑ(위) ㅑㅑ(의)

<해설>

1. ‘한 단어 안’이란 하나의 형태소 내부를 뜻한다. ‘소쩍-새, 아끼-다’는 각각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지만, 된소리 문제는 그 중 한 형태소인 ‘소쩍’, ‘아끼’에만 해당한다.
2. ‘뚜렷한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 있어서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이 아님을 말한다. 즉, 불규칙적인 현상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만일 ‘소적새’로 적어 놓으면 읽을 적에 [소적새]로 읽게 되므로 원래의 단어와 달라진다. 이것은 ‘ㄱ, ㅂ’ 뒤에서 된소리와 다른 수의적인 현상이다. ‘국수’는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국쑤]로 발음하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해설5 참조]
3. 받침 ‘ㄴ, ㄹ, ㅁ, ㅇ’은 유성음으로 평음을 경음화시키는 필연적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건더기, 꿀단지; 불거지다, 줄기; 감감하다, 삼가다, 엄살; 빙그레, 둥굴다’
4.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맞춤법 규정 제13항에 다시 언급된다.
5. ‘ㄱ, ㅂ’ 받침 뒤에서는 필연적으로 된소리가 나는 환경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누구나 된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ㄱ, ㅂ’은 파열음으로 그것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불파화가 일어나 후행하는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데 이런 현상은 자동적이고 필수적이다. 즉 예외가 없다. 파열음은 조음될 때, ‘폐쇄, 지속, 개방’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받침으로 쓰일 때는 ‘개방’이 생략되기 때문에, 입안의 공기 압력이 증가하여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되게 한다.

제 2 절 구개음화

제 6 항 ‘ㄷ, ㅌ’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말이	마지	핥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걸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달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해설>

1. ‘종속적 관계’란,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실질형태소는 그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

ㅅ'으로 적는다.

3. 표준어에서는 'ㄷ/ㅌ-구개음화'만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한다. 음운론적으로는 'ㄱ→ㅅ /-{이, ㅕ}'도 구개음화이다.

4. 역사적 구개음화(7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

※ 턴>천, 디>지, 터>쳐, 턴디>천지

이들은 비록 형태소 결합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한 형태소 안이지만,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구개음화를 겪었기 때문에 구개음화로 인정할 수 있는 예이다. 근대국어에서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참고 :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에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 형태소 내에서나 합성어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발#이랑 [반니랑]/[*바치랑], 홀#이불 [훈니불]/[*호치불] (합성어);

잔디(<잔디) [*잔지], 느티나무(<느티나무) [*느치나무] (한 형태소 안)

☞ [탐구문제]

※ '마디, 견디다'는 역사적으로 '마디, 견디다'에서 변하였다. 이런 사실로부터 '마디, 견디다'에 'ㄷ-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모든 음운 현상은 역사적으로 '생성-성장-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구개음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구개음화가 생겨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마디, 견디다' 등이 '마디, 견디다'이었다. 이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려고 해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 후 '마디, 견디다'가 '마디, 견디다'로 바뀌어 구개음화의 적용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는 구개음화 규칙이 소멸됨으로써 이런 환경에서의 구개음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부연 : 구개음화는 17~8세기 교체기에 일어남. 구개음화의 결과 '디 님 더 도 듀', '티 타 터 투 튜' 등의 결합이 국어에서 자취를 감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에 의해, '디, 티' 등이 '디, 티'로 변하게 되어 다시 이들 결합이 나타나게 됨. 무디다>무디다, 견디다>견디다)

5. 구개음화 규칙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1) 1단계 구개음화 : ㅅ[ts] → ㅅ[ʧ]

2) 2단계 구개음화 : ㄷ → ㅅ/- { | /이}

3)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 이/의 → 이

4) 3단계 구개음화 : ㄷ → ㅅ/ - +{ | /이} ' +'는 형태소 경계

제 3 절 'ㄷ' 소리 받침

제 7 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돛자리 엿شم 웃어른 핫웃 무룻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해설>

1. ‘ㄷ’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에 [ㄷ]으로 실현되는 ‘ㅅ, ㅆ, ㅈ, ㅊ, ㅌ, ㅍ’ 등을 말한다. {ㅅ, ㅆ, ㅈ, ㅊ, ㅌ, ㅍ} → ㄷ / -{#, ㄷ}

2.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ㄷ’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1) ‘ㄷ’으로 적을 근거를 가진 단어는 다음 두 가지 경우다.

(1) 어원적으로 ‘ㄷ’받침을 가진 단어 : 견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낱가리(낱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돋보다(도두 보다) 굳세다(굳고 세다)

(2) ‘ㄷ’받침을 가진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결합하면서, ‘ㄷ’이 ‘ㄷ’으로 바뀐 경우 : 반진고리(바느질-고리), 사흘날(사흘-날), 손가락(술-가락)

2) 사전에서 ‘발-’형으로 다루고 있는 ‘발사돈, 발벽, 발쪽, 발다리’ 등은 ‘바깥’과의 연관성을 살리기 위해 ‘발-’형을 취하여 적고 ‘뱃-’형으로 적지 않는다.

제 4 절 모 음

제 8 항 ‘계, 례, 메, 폐, 혜’의 ‘ㄷ’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ㄷ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매(連袂)	연매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계시단	계시단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송(偈頌)	계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

< 해 설 >

1.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2 “‘예, 레’ 이외의 ‘케’는 [카이]로도 발음한다.”라고 하여, ‘계, 메, 폐, 헤’를 [게, 메, 폐, 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철자 형태와 발음 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케’로 굳어져 있어서 원음대로 적기로 한다. 다만, ‘으레, 케케묵다’는 표준어 규정 제10항에서 단모음화한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으므로, ‘으레, 케케묵다’로 적어야 한다.

2. ‘-게 : -개’ 쓰기

- 조사, 어미(철수에게, 따뜻하게, 가지 말게)와 첩어 부사(몽게몽게, 생게망게, 웅게웅게)에서는 ‘-게’만 쓴다. 명사의 파생어에서는 ‘지게, 집게, 명게, 무게’ 따위만 ‘-게’로 쓰고 그 외는 대부분 ‘-개’로 쓴다(찌개, 귀이개, 지우개, 깔개, 뜨개질, 베개, 부침개, 병따개, 오줌싸개 등). <임성규(2008:53), 교사를 위한 국어맞춤법 길라잡이, 교육과학사>. 육개장, 뜨개질.

제 9 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닝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피어쓰기	피어쓰기
무늬[紋]	무니	씩어	씨어
보늬	보니	틋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닐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히

< 해 설 >

표준발음법에서 ‘ㄴ/의’의 발음은 ‘의’외에도 ‘ㄷ, 이, 에’를 허용하고 있으나 표기에서는 원래의 형태를 적어야 한다.

제 5 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쫙(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룽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레이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真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울’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稜)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내일(來日)	래일
노인(老人)	로인
뇌성(雷聲)	뢰성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다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 해 설 >

<다음 법칙>에 대한 규정이다.

1. 다음법칙이 적용되는 조건 : 한자어 단어에서 어두 음절에 적용
- 고유어나 비어두음절에서는 다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본 음대로 적는다.
2. 의존 명사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다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고얀 녀석, 께쌌한 년, 바느질 한 님, 동전 한 닢, 2012년
3. ‘年’이 ‘한 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명사이므로 다음법칙을 적용한다.
예) ‘年度(연도)’. 연 5회
- ‘設立年度’와 ‘會計年度’도 ‘設立-年度’와 ‘會計-年度’로 분석되는 합성어다. 따라서 ‘설립연도’와 ‘회계연도’로 적어야 옳다.
4. 남녀 : 합성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처리한다. 그리고 뒤의 ‘녀’가 자립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성별을 나타낼 때는 ‘남, 여’로 쓴다. 이때는 ‘여’가 자립적인 하나의 단어로 쓰였기 때문임.

5.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다만,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 姓氏의 ‘梁, 呂, 廉, 龍, 柳, 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각각 ‘양, 여, 염, 용, 유, 이’로 적어야 하지만, 고유명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류, 리’ 등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7. ‘雙龍’의 경우,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으므로 ‘쌍룡’으로 적어야 한다.
8.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예) 홍길동
다만, 외자로 된 이름이나 두자로 된 성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띄어 쓸 수 있다. 예) 허 용, 제갈 속

 <참고>

• ‘권울’: ‘권률’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가계 이름)을 표시하고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 부호와 같은 것으로 둘 모두 순수한 고유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아 붙여 쓰기로 했다. 그러나 붙여 쓰더라도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의 첫 자는 두음법칙에 따라 적어야 한다. 이 점은 한 글자로 된 성과 이름도 마찬가지다.

(1) 김양수(金良洙), 김윤식(金倫植), 박용철(朴龍喆), 이인영(李麟榮), 조영하(趙寧夏)

(2) 김용(金龍), 정염(鄭??)

그런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 하여 다음 (3)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3) ㄱ. 신립(申昝),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蔡倫)

즉, 한 글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으로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실립, 최린, 채륜, 하륜’으로 익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에는 다음의 예도 포함됩니다.

(4) 김립(金笠): ‘김삿갓’을 한자식으로 부르는 이름

결국 이 조항은 (3), (4)의 예와 같이 역사적 인물의 성명 가운데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형태와 동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울(權慄)’은 (3)과 (4)에 제시된 다섯 예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한

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가 적용될 수 있는 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권울(權慄)’은 ‘권울’이라고 해야지 ‘권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

9.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예) 미립자(微粒子), 소립자(素粒子), 수류탄(手榴彈)-총유탄(銃榴彈),
파렴치(破廉恥)-몰염치(沒廉恥)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예) 개연(-蓮), 구름양(--量), 수용[雄龍]
11. ‘육육삼십육(6×6=36)’과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한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의 경우는 ‘오/육, 육/육’으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12. ‘릉(陵)’과 ‘란(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고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13. ‘고랭지(高冷地)’는 ‘고랭-지’로 분석되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는다.
14.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의 경우도 제11항 붙임 1 규정을 적용하면, ‘연련--, 유류--, 누루-’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년--], [유유--], [누:누-]로 굳어져 있으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적는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 법사 스님의 법사.), 요요무문(寥寥無聞 : 명예나 명성이 보잘 것 없어 남에게 알려지지 않다.), 요요하다(寥寥-- : 몹시 쓸쓸하다.)’ 등이 더 있다. 위에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음법칙에 따른다.

낭랑하다(朗朗--), 연년세세(年年歲歲), 역력히(歷歷-), 냉랭하다(冷冷--), 낙락장송(落落長松), 염념불망(念念不忘), 늠름하다(凜凜--), 녹록하다(碌碌--), 연년생(年年生), 적나라하다(赤裸裸--)